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통일부
통일교육원



목 차



I.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1. 수립 배경	3
2. 추진 경과	4
II. 현황	5
1. 2019년 평화·통일교육 현황	7
2.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11
3. 2019년 평화·통일교육 평가	14
III. 추진 방향	15
1. 2020년 추진 방향	17
2. 평화·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19
IV. 정책과제	21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23
2.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	29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6
4. 평화·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	41
5.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조사·연구	45
6.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53
7.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55
V. 협조·요청사항	59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61
2. 통일교육주간 참여	63
3.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강화	64
VI. 부록	65
1. 2019년 통일교육 통계	67
2. 2020년 통일교육 예산	69
3. 통일교육 법령	70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I.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수립 배경

-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시
 -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법 제6조)
 - * △기본원칙, 추진목표, 방향 △국민의식 제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강화 △통일교육 교재 개발 △통일교육 단체 지원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시설·장비 확충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계획을 포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제시
 - 법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법 제5조 제3항)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의 협조를 규정(시행령 제3조의2)

< 통일교육기본계획 관련 규정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추진 경과

- 통일부는 법에 따라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 단위 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
 - 각 기관별 통일교육 계획을 종합하여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배포
 - * 미발간 연도 : '02년, '04년, '07년, '15년
- 2019년부터 기본계획의 체계와 구성을 개편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발간('19.3월)
 - 범정부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7개 정책과제 - 33개 세부추진과제 별로 종합·정리
-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에 따라 세부추진과제를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으로 수립
 - *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경과
 - '19.10.10. (통일부 → 교육청 교육훈련기관) 교원 대상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 과정 반영 요청
 - '19.12.5. (통일부 → 관계기관) 작성 지침 통보 및 작성 요청
 - '19.1.6. (관계기관 → 통일부) 각 기관 계획 제출
 - '20.2.14. (의견 수렴) 「통일교육 민관협의회」 상정 및 논의
 - '20.2.26. (통일부 → 관계기관) 시행계획 통보



현 황

II. 현황

1 2019년 평화·통일교육 현황(통일부)

1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지속·확대

□ 평화교육 도입

- 남북 평화와 공존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 △시민 역량 강화 △과정 중시 △평화감수성 함양 강조

-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주요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 기존 체계와 구성을 개편하여 33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로드맵 마련

- 제7회 통일교육주간('19.5.20~5.26.) 개최

- 전문가,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학문을 망라하는 공론의 장 마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 프로그램 개최

- * 개막식, 국내·외 학생 대상 특강, 공모전·캠프·토크콘서트 등 참여 행사, 지역별 전시·문화공연·시민강좌, TV 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등

□ 평화·통일교육 양적·질적 역량 제고

- 대내·외 교육 대상 확대 및 다변화

- 공직자, 교사, 통일단체, 각계 최고경영자, 지역 인사 및 DMZ 평화의 길 평화해설사 등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 6개 과정 운영

- 체험·소통에 중점을 두어 교육 커리큘럼 개편

- △참여·소통형 수업 확대 △관문점·오두산전망대·강화도·하나원·DMZ 평화의 길 등 현장방문 다양화 △교육생 수요·만족도를 반영한 커리큘럼 운영

- 사이버통일교육 6대 과정(공공/교원/2030과정/시민과정/방북/경남교육청) 운영, 약 35만 명 이수
- 외국 초·중·고, 대학생 등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21개국 해외 신진학자 초청 아카데미 운영 등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확대
- 해외 학자 초빙 및 북유럽 평화교육 기관 협력 등 전문성 강화

2] 분야별 평화·통일교육 지원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의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학교통일교육정책협의회」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진로 체험형 과제와 연계된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33개교) 등 학교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강화
 -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72개교),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크리에이터 부문 신설), 어린이 기자단(214명)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통일교육 선도대학 확대 등 대학생 평화·통일교육 기반 확충
 - 선도대학 추가 선정(3개교), 움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에 신규 신청 대학 선정 등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회 확대
 - 통일 모의국무회의, 권역별 토론대회, 대학 동아리(6개) 활동 지원 등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추진

□ 지역사회 통일역량 강화

-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 강화 지원
 - 연찬회, 자료 지원 등을 통해 통일교육위원 역량 개발, 지역 통일관 방문객 대상 해설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 지역통일교육센터*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실무자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지원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도모

* 열린통일강좌 등 1,696회 개최, 221,521명 참여

- 지역 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 콘텐츠 보강 등으로 통일 체험의 장으로서 기능 강화
 - △경남통일관 리모델링 △4.27 판문점 디오라마 특별전시전 △VR (가상현실) 통일체험·남북 전래놀이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 통일관 관람 2,015,000여명, 통일체험 프로그램 참여 67,400명

□ 분야별·세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

- 공공부문 의무 통일교육 체계 구축
 -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진 계획 수립·시행 등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및 안정적 추진
- 2030세대 대상 새로운 형식의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
 - 유튜브 콘서트 방송 「통일청춘LIVE」*, 평화경제 창업 공모전인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등 2030세대 대상 신규 사업 추진
 - * 북한이탈주민 출신 청년 유튜버들과 함께 연애·음식 등 일상적 주제로 토크쇼 진행

③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다변화

- 다양한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의 자료를 개발, 평화·통일교육 도서 대중화 시도
 - * 퀴즈북, 명사특강, 판문점 안내서, 뮤지컬과 통일, 평화인문 시리즈 등
- 캠페인 광고 「평화와 소통의 두드림」 송출 및 대상별로 다양한 형식의 영상 자료 제작·방영
 - * 웹기반 토크쇼, TV 특별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학교 교과용 클립영상 등

□ 사이버 평화·통일교육 확대

- 사이버교육 이수자 20만 명 돌파 및 교육생 다변화
 - 이수자가 '07년 2,046명에서 12년 만에 약 100배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치인 작년의 기록(11만 명)을 1년 만에 약 2배로 갱신
 - * '19년 사이버교육 이수자 현황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직접 접속 약 22만 명, 외부 기관 제공 약 13만 명으로 총 35만 명 이수
- 기존 공무원·교원 중심 교육과정에서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재편성 및 콘텐츠 확대
 - △일반인 교육생 수요를 반영하여 2030과정 및 시민과정 신설
△일반인 선호도 및 이해도를 반영하여 모바일 적합형 콘텐츠 제공
 - * '19.10.14.~12.31. 간 일반인 과정 이수자는 약 6,200명으로 '18년(2,87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
-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사이버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소통 강화
 - △유튜브 등 뉴미디어 통일교육 및 홍보 본격 추진 △K-mooc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 사업 참여 △외부 기관 콘텐츠 제공으로 통일교육 플랫폼 확대 등
 - * 유튜브 및 SNS 팔로워 현황 : ('19.3월) 1.26만 명 → ('19.12월) 1.54만명
 - *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 외부 기관 제공 : 49개 기관 약 13만 명 이수

< 2019년 통일교육원 교육과정별 통계 >

교육과정		교육인원(명)
원내과정	전문과정	157
	공직자통일교육과정	2,117
	학교통일교육과정	1,224
	사회통일교육과정	1,448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219
	특별교육과정	561
사이버통일교육과정		219,584
원외교육		499,439
계		724,749

2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통일부는 교육부·교육청의 협조 하에서 매년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초·중·고 598개교 학생·교사 69,859명)으로 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2)

< 2019년 학교통일교육 학생·교사 실태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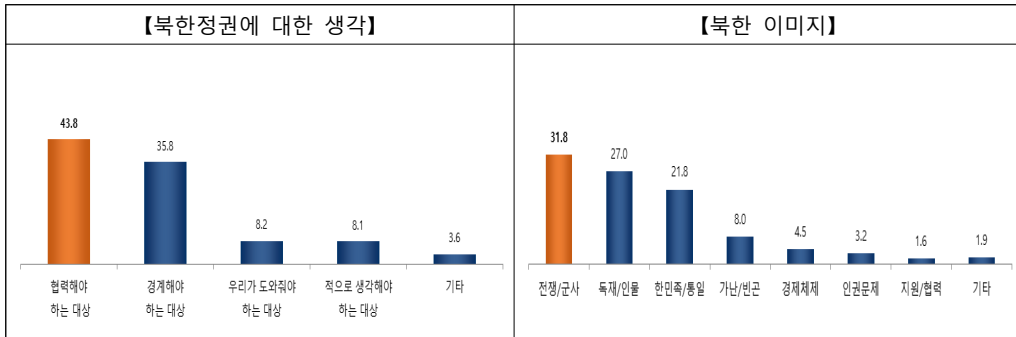
□ 조사 개요

- 초·중·고 통일교육 실태 조사(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 '14년부터 실시, 교육부·교육청 협조)
 - (대상) 초·중·고 598개교 69,859명(학생 66,042명, 교사 3,817명)(연구학교 학생 8,055명 별도)
 - * 학생 : 초 19,679명(5·6학년), 중 23,094명, 고 23,269명(95%신뢰수준±0.38%p)
 - * 교사 : 초등 담임, 중등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95%신뢰수준±1.58%p)
 - (시기·방법) '19.10.21.~11.29, 우편 및 방문 조사(통일·북한 인식 등 20개 문항)
 -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컨설팅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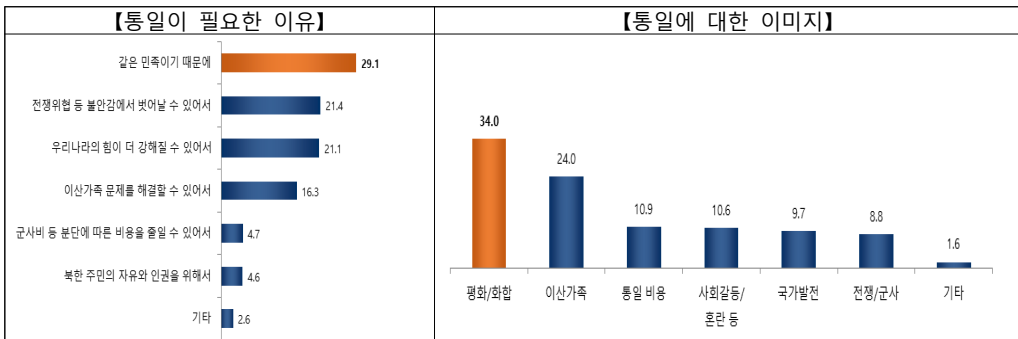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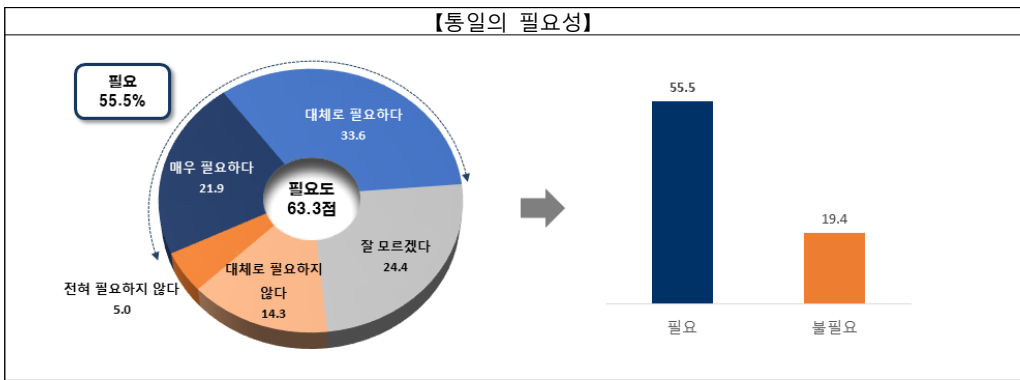
【학생】

- 초·중·고등학생들의 대북인식은 '18년과 비교시 부정적 인식 증가
 - 북한(정권)에 대한 생각 : 협력 43.8%(7.1%p↓) > 경계 35.8%(7.6%p↑) > 지원 8.2%(3.9%p↓) > 적대 8.1%(2.9%p↓)
 - 북한 이미지 : 전쟁·군사 31.8%(2.1%p↑) > 독재·인물 27.0%(0.3%p↑) > 한민족·통일 21.8%(3.1%p↓)



○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도 감소

- '통일 필요성' 55.5%(7.5%p ↓), '통일 불필요' 19.4%(5.7%p ↑)
- 다만, 통일의 평화·화합 이미지와 한민족 의식("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답변은 증가 경향
 - * 통일 이미지 '평화·화합' : ('17)32% → ('18)33.9% → ('19)34.0%
 - *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한민족 의식 : ('17)14.7% → ('18)21.6% → ('19)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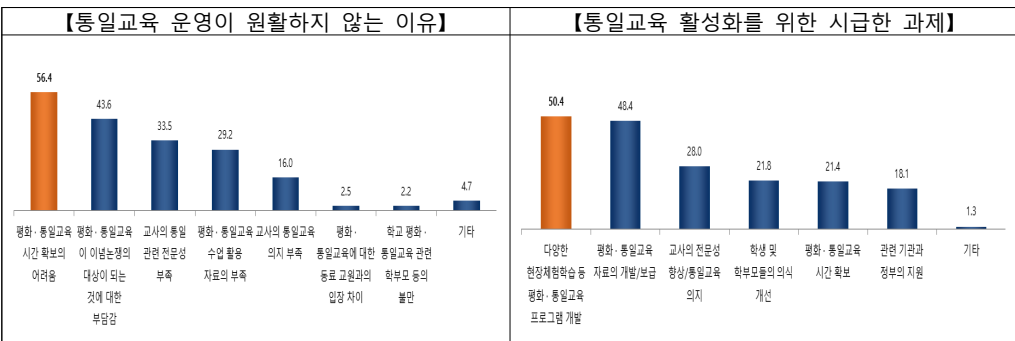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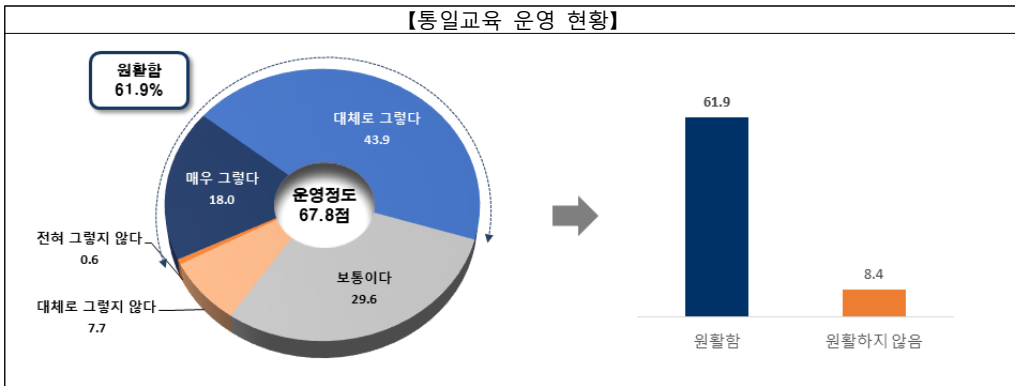
【교사】

○ 학교통일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가 증가

- 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1.9%(8.9%p ↑), '원활하지 않다' 8.4%(3.0%p ↓)

○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 △다양한 체험활동(50.4%) △통일교육 자료 보급(48.4%) △교사의 전문성 향상(28.0%) △학생·학부모 의식개선(21.8%) △통일교육 시간 확보(21.4%) 등 제시(복수응답)



【평가】

- '19년 남북·북미관계 교착상태 전환에 따른 학생들의 기대감 하락 등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증가와 통일 필요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 교사들은 전년도('18년)에 비해 학교통일교육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이는 '18년 남북관계 진전 이후 교사들의 통일교육 시간 확보가 비교적 용이해지는데 따른 결과로 파악

3 2019년 평화·통일교육 평가

□ 성과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층 더 심화
 - '18년 70여 명이 참여하여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을 토대로 '19년 통일교육 관계자들이 분야별로 폭넓은 논의 진행
- 평화·통일교육 방향에 부합하도록 커리큘럼 대폭 개편
 - 평화경제, 평화체제, 민주시민교육, 평화학 등 교과목을 다수 신설, 평화 체험현장 발굴, 평화해설사 양성 시도 등 현장 학습도 개선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다양한 거버넌스 시도
 - △평화·통일교육 개념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통일교육주간, '22년 교육과정 개정 준비, 통일교육 10시간 권장 등 '20년 사업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 * 국가교육회의,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연구기관을 포함 총 8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협의회 구성·운영중
-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2030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 △평화경제 등 일상과 연계(「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활용(「통일청춘 LIVE」) △평화·통일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웹기반 영상 '감성토크 굿피스') 등
-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 개발·배포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교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는 기반 형성

□ 보완사항

- 통일교육 주요 관계자에 한정된 공감대 형성,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일공감대 확산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장 필요
- 종교·사회 이외에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으로 평화·통일교육 협업 분야 확대 필요



추진 방향

III.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향

1 2020년 추진 방향

o 평화·통일교육 기반 확대

- 사회적 합의 확대 및 구체화·현실화시켜 교육 현장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화·통일교육 적극 실현
- 제8회 통일교육주간(5.18.~5.24.) 계기시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개최, △해외 갈등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모범 사례 전파 △대중적 흥미 제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DMZ·관문점 해설사 등 교육 대상 다변화 △평화통일·평화경제 커리큘럼 발굴 및 교육과정별 모듈화(연령, 이해도·관심도 등에 따라 강의안 및 참여 수업 반영) 등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o 차세대 전문가 양성

- 대학(원)생 등 2030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통일·북한·국제학 전공자 대상 「청년 통일리더스 아카데미」 신설
- 해외에서 초청하는 방식의 「신진학자 아카데미」와 별도로 국내 대학 재학 외국인 석·박사생 대상 과정 시범 운영

o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허브 기능 강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위원 재지정(위촉) 및 역할 재정립 △지역 통일관 이용 확대 등 추진
- 교육훈련기관, 여성, 종교, 경제단체 등 주요 단체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등 협력 관계 구축
- 통일교육협의회 관리·운영 강화 및 민간 평화·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지속 추진

o 공공부문 의무 통일교육 체계적 지원

- 대상 기관별 교육 실태 점검·평가, 강사 역량 강화 및 관리 체계 강화

o 2030세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홍보 실시

- '19년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2030세대가 체감하는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위해 홍보와 맞춤형 교육 강화
- △유튜브 등 플랫폼 확대 △인스타그램 활성화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 개발 △온라인 캐릭터 사업 확대 등 추진

o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 문화·예술과 연계한 평화통일 체험 시도 △전국 평화통일체험장 발굴 △국외캠프 코스 발굴 등 체험 프로그램 다변화
- DMZ 평화의 길 체험 추진, 도서·벽지 학교 체험교육 지원 확대, 『평화·통일 현장 교육 안내서(안)』 발간 등

o 사이버 통일교육

- 사이버 통일교육 6대 과정별(공공/교원/2030/시민/경남교육청/방북) 과정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도서 및 영상 개발과 협업
- 모바일 기능 확대,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o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도서를 적극적으로 제작

- 심리, 역사, 문화재, 미래학, 문학, 음악, 그림 등 다양한 소재의 시리즈 콘텐츠 지속 발간 및 새로운 형태의 도서 제작
- 세대별 선호 채널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신규 콘텐츠 개발, 글로벌 다큐멘터리, 공공부문 통일교육용 영상 등 수요맞춤형 영상 제작

* (10대)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카카오톡 이모티콘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등 (20대) 인지도 있는 TV 프로그램과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2 **평화·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정 책 과 제		소관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1-1.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반 강화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교육부·교육청
1-2. 학생 평화·통일 인식 제고		
1.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교육청
1-3.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		
1.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대학생 체험활동 및 통일 논의 활성화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		
2-1.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		교육훈련기관
2-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1.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추진		지방자치단체
2-3. 2030세대 평화통일교육		
1.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4. 부문별 평화통일교육		
1. 평화·통일교육 부문별 거버넌스 구축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1. 교원 연수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교육부·교육청
2.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1. 세대별·분야별 전문가 양성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2.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I
II
III
IV
V
VI

정 책 과 제	소 관
4. 평화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	
4-1. 통일공감 참여형 문화행사	
1.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	지방자치단체
4-2. 통일공감 온라인 홍보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5.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조사연구	
5-1. 콘텐츠 개발	
1. 출판물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2. 영상자료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3. 강의안 등 기타자료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4. 교수·학습 콘텐츠	교육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5-2. 이러닝 개발	
1. 사이버강의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교육부
5-3.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사연구	
1.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6.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6-1. 통일 문화공간	
1. 통일관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6-2. 통일 체험연수 시설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7.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7-1. 평화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 해외 전문가 초청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평화·통일 글로벌 교류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교육부, 교육청
7-2.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추진	
1. 해외 신진학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정책과제

IV. 정책과제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학생들의 평화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참여·체험형 교육 확대 등 기반 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추진

* 법 규정 사항 : 학교 통일교육 진행(제8조)

1-1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반 강화

1-1-① 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 확대 노력
 - 협의회*에서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수업 실시,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확대, 참여·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항 논의
 - * △학교통일교육정책협의회(통일부-교육부, 3회) △학교통일교육지원협의회(통일부-교육부-교육청, 2회)
 - 각 시·도 교육청 교사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발전워크숍' 추진, 교원 연수 및 평화·통일교육 우수사례 공유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대
 - 평화·통일교육 포괄적인 협의를 위해 교육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정책협의회' 신설, 평화·통일교육 방향 등 논의
 - * 평화·통일교육정책협의회 신설(통일부, 교육부, 세종교육청, 국가교육회의,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및 운영(3회)

□ 추진 계획

-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거버넌스 강화
 -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 협업 강화
 - * △평화·통일교육정책협의회(격월) △정책협의회(계기시) △지원협의회(반기)
- 교육 현장에서의 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협의 추진
 - 발전워크숍 등 소통 강화로 교사들에 대한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1-1-②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19년 실적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 「통일교사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과 교육, 학급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수업사례집 제작 등 지원
 -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운영을 통해 학교급별 평화·통일 수업 추진
 - * 대표사례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활동 중심 통일수업 블록타임 진행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운영
 - 학교 현장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운영 계획 수립,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체험 중심 및 학년간의 연계성 있는 교육 운영
 - 교육청 협조로 각급 학교에 도덕, 사회, 역사 등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10시간 이상(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6시간)) 운영 권장
 - * 통일교육주간 △대구·광주·경북·세종·제주 교육감 특별수업 실시 △충남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수업 참여율 96.8%
 - * 대표사례 :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 1학년 대상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실시

□ 추진 계획

- 교과 수업을 통한 내실화
 - △도덕, 사회과 교과(군)를 비롯하여 국어, 과학, 예술, 가정 등 다양한 교과(군)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업 실시
 -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 및 교과 융합 수업 권장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내실화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및 자유학기제 활동(주제선택활동 등)과 연계한 교육 실시 권장, 통일교육주간 계기 집중 및 자율 운영
 - * 교육청별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지원 학교 운영

1-2 학생 평화·통일 인식 제고

1-2-①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학교 평화·통일교육 모델의 개발과 확산 노력
 - 진로체험형 과제와 연계된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33개교) 및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개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1,050개교) 지원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통일체험교육 경비지원(72개교) △통일리더캠프(국내 35회, 국외 2회) △통일부 어린이기자단(214명)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 등
 -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평화크리에이터' 선발 신설, 영상 제작 지원
- 참여·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지원
 - △교구재 개발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 제고 △체험교육 컨설팅 우수 사례집 제작 등

□ 추진 계획

- 학생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참여·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운영
 - 접경지·DMZ의 평화·통일 현장체험 확대 운영
 - 음악·미술·공연·전시 등 문화·예술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운영
 - * 학교통일 체험교육(183개교), 통일리더캠프(23회), 어린이기자단(200명)
- 학교 평화·통일교육 모델의 개발과 확산 노력
 - 「평화감수성 배양을 위한 통일교육 실천 모델 개발」 과제와 연계된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23개교)

1-2-②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19년 실적

○ 학생 통일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진행

- 학생 평화·통일교육 리더십캠프, 학생 동북아 평화·통일체험, 수능 후 사제동행 평화캠프,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등 추진

* 대표사례 : (전라남도교육청)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 DMZ 평화인간띠 잇기 대장정

○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대학 지원

- 학생 체험 중심 통일동아리 운영, 현장체험 및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축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지도 교사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에 참여

* 대표사례 :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 교육청별로 특별 프로그램 진행

* 대표사례 : (충청남도교육청) 개성공단지원재단 남북협력 관련 통일 강좌 (전라남도교육청)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미래 교육박람회 통일교육 부스 운영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 계획

○ 학생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 사제동행 평화·통일 공감 캠프 등 교원·학생 대상 프로그램 지원

* (교육부 지원)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평화·통일교육 워크숍 △통일 시대를 맞는 평화포럼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사제동행 평화·통일체험 △학생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토크콘서트, 영화제 등)

* (시·도 교육청) △교사연구회(학습공동체) △평화·통일동아리 △교원·학생 국내·외 체험학습 사업 등

1-3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

1-3-①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역별·기능별 평화·통일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발전
 -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존 6개 선도대학('16년 지정)에 3개* 선도대학을 추가 선정
 - * 강원대, 인제대, 한동대
 - 9개 대학 교과 45강좌, 비교과 47개 사업 실시(10,966명 참가), 통일교육주간 계기 선도대학별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6,446명 참가)
- 통일교육 선도대학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발전방안 정책용역* △대학별 모니터링·컨설팅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성과발표회 실시 등
 - * 『통일교육 선도대학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 추진 계획

- '16년 선정 4년차 6개 대학 사업 완료에 따른 선도대학 사업의 성과적 계승 및 사업의 안착과 발전 도모
- ('16년 선정대학 6개) 1~2개 재선정(이하 '재진입대학')하여 선도대학 사업을 안착시키고 향후 자체운영 발전모델로 육성
 - * 탈락한 대학들은 '통일교육 협력대학'으로 지정, 평화·통일교육의 주체로 계속 협력
- ('19년 선정대학 3개) 1차년 사업을 수정·보완, 발전시켜 2년차 사업의 성과 고양 노력
- ('20년 신규 선정) 신규로 4~5개 대학을 선정하여 평화·통일교육 기획 제공

1-3-② 대학생 체험활동 및 통일 논의 활성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추진
 - 신규 신청 대학·비수도권 대학 등에 가점 부여, 38개 대학 52개 통일·북한 관련 특강(21건) 및 정규강좌(31건) 개설 지원
 - △책임교수 인센티브제 도입 △팀티칭, 프로젝트 학습 등 효과적인 교수방법 도입 및 강의 내용 다양화를 통해 만족도와 관심 제고
 - * 통일교육 선도대학들과 연합 학술회의를 통해 대학 평화·통일교육 정보 공유 및 평화·통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 대학생들의 자율적 통일체험 활동 지원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를 통해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통일동아리(6개교),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지원
 - △통일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 등

□ 추진 계획

- 특강 및 강좌사업은 1, 2학기로 구분하여 공모방식으로 대학 선정
 - 52개 강좌 지원(1학기 23개교, 2학기 29개교), 참여 대학을 확대하여 평화·통일교육 확산
-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운영의 적정성 강화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확대
 - △현장 학습 관련 자율성 부여
-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참여대학의 운영실태 점검 강화
 -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별 사업을 수시 점검·확인

2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

◎ 분야별·지역별·세대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등 평화통일 의지 제고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법 규정 사항 :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6조의7), 지역통일교육 센터(제6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통일교육 반영(제7조), 통일교육협의회(제10조), 통일교육위원(제10조의2)

2-1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

2-1-①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공공부문 의무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공공부문 통일교육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교육 실시 방법, 교육 지원 사항, 대상기관 책무, 결과 제출 방법, 강사 관리 등

- 실적 집계 등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 실적 현황, 추천 강사 정보 관리 등 실시

□ 추진 계획

○ 공공부문 통일교육 내실화 도모

-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추진 계획 수립·시행

- 대상 기관별 교육 실태를 온·오프라인으로 점검·평가(연중)

-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남북관계, 통일정책 등 관련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별 역량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 체계 강화

* 신규 추천 강사 선정 여부는 각 기관의 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결정 예정

2-1-②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교육훈련기관)

□ 2019년 실적

- 분야별 교육훈련기관에서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별과정 운영 및 신규자, 승진자, 중견리더 등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 반영

- 전문가 초빙 강의, 현장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 실시

- * 대표사례 : (강원도인재개발원) 평화지역 탐방과정 운영 등 158시간 교육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서해평화이해 과정 운영 (법무연수원) 통일교육 분임토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DMZ 현장 체험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우리의 통일 미래 과정 운영

- 교원연수원에서 특별과정 운영 및 직무연수, 자격연수, 맞춤형 현장견학 등에 교과목 편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반영

- 학교 관리자, 탈북학생 지원 교사,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 교육부 신규자 등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교감, 정교사 등 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통일역량 강화 수업 포함

- * 대표사례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92시간 평화·통일교육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와 통일교육의 방향 등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연수원) 초·중등 통일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반 운영 (전라북도교육연수원) 평화교육 직무연수 (중앙교육연수원) △한반도 정세 △평화통일과 교육 △국제정세와 통일한국 등 교과목 편성

□ 추진 계획

- 장기 연수과정에 통일 관련 교과목 적극 편성, 다양한 방법의 연수를 통한 맞춤형 연수 강화
 - 기본교육 전반에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속, 현장학습도 병행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 * 대표사례 :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동북아 평화 이해 과정 운영 (통계교육원) 북한통계의 이해 과정 운영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남북경협과 해양과정 운영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평화통일 의식 확산 강의 반영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장기 교육과정에 남북한의 언어, 통일 준비와 공직자의 자세 등 교과목 운영 확대
 - 교육훈련기관 간 사이버교육을 연계하여 이러닝 콘텐츠 상호 활용
- 다양한 경력, 직급을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공감 교육연수원 연수 운영
 - 신규 교사·경력교사 대상 직무연수, 자격연수 등
 - * 대표사례 : (중앙교육연수원) 학교 관리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이해과정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역사·민주·인권·평화 관련 과정 운영시 통일교육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자격연수 과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직무연수 편성

2-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2-2-①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연찬회, 워크숍, 자료 지원 등을 통해 통일교육위원 역량 개발, 지역 통일관 방문객 대상 해설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밀착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 △열린통일강좌·통일순회강좌 등 주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주간 운영 △통일문화축제·경연대회 등 자율사업 추진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등
 - * '19년 기준 열린통일강좌 등 1,696회 개최, 221,521명 참여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내실화
 - 일반시민, 사회단체 회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등으로 민 - 관
간 교육 시너지 효과 창출
 - 민간 통일교육 단체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 * '19년 기준 평화·통일교육 실시 319회 개최, 38,638명 참여

□ 추진 계획

- 통일교육위원 신규 위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제22기 통일교육위원 신규 위촉, 특별 역량 강화 사업 등 국내·외
통일교육위원 연찬반 운영
- 지역통일교육센터 심화·재편
 - △지역주민 중심 사업 확대 △공공부문 통일교육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역할 추진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관리 강화, 효율적인 단체 활동 유도
 - 세대별·계층별 상황 반영 및 신규 사업 추진 유도

2-2-②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추진(지방자치단체)

□ 2019년 실적

- 학교·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사업 실시
 - 전문가 강의, 문화공연, 통일퀴즈 등 통일공감대 확산 교육
 - * 대표사례 : (광주광역시) 이동 통일관 운영 (경상북도) 경북 통일화랑 아카데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민대학 정책아카데미 통일교육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으로 시민 대상 통일사업 추진
 - * 대표사례 :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합동) 열린평화통일포럼 (경상북도) 시민대토론회 (충청북도) 청년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교육 (부산광역시) 제2기 통일열차 리더십 아카데미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 찾아가는 학교 교육, 강사 양성, 문화·예술 콘텐츠형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 민간단체 및 시민 대상 사업 지원, 공모사업 추진
 -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스포츠를 통한 피스메이커 (광주광역시) 통일이야기가 있는 코리안 드림 토크콘서트 등 (대구광역시) 보드게임을 활용한 청소년 통일교육 등 지원
 - 세대별·지역 특색을 반영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청년 전문가 양성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강의·문화 공연 추진
 -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 평화 아카데미 (강원도) DMZ 지역 주민 대상 남북 평화 지역 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교육,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공연
- ### □ 추진 계획
-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 통일공감대 확산 교육 실시 및 지역 통일 전문가 양성
 -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경상북도) 경북 통일화랑 아카데미 수료 후 통일교육 전문가로 활동, 청년 대상 대학생 평화통일 아카데미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대표사례 : (전라남도) 통일교육주간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강원도) DMZ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군 규모 확대 (대구광역시) 미래세대 통일교육 공모

2-3 2030세대 평화통일교육

2-3-①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2030세대 평화
 -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최
 - 통일교육주간 계기 평화와 통일 관련 퀴즈, 북한 과자 시식회, 음악 공연 등 남북 청년 합동 유튜브(YouTube) 방송 「통일청춘 LIVE」 콘서트 진행
 - * 일반인 참가자 1,777명, YouTube 송출 1,636회 기록
 - 평화경제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신규 추진, 강연 및 33팀 창업 아이디어 경진 등 진행
 - * 아이디어톤 : 아이디어 + 마라톤의 합성어로 어떤 주제나 사업에 대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민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사업 수익모델을 완성하는 경연대회

□ 추진 계획

- 2030세대들의 관심사와 주요 정보획득 방식을 고려한 통일문제 답론 창출의 기회 마련
 - 직접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청년들의 '트렌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과 참여를 유인
- 기존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보완·개편
 - 청년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변경
- 전문가 자문 및 참가자 설문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질 제고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청년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2-4 부문별 평화·통일교육

2-4-① 평화·통일교육 부문별 거버넌스 구축(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협업 모색
 -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계, 여성계 등과 평화·통일교육 추진 업무 협의
 - 한국자유총연맹 20여 개 지부 회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 * 강의 32회 개최, 3,235명 참여
- 교육훈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도모
 - 각 시·도 교육청 교원연수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확대 요청 및 서울시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추진
- 지역사회와의 상호 연계 및 협력 관계 구축
 - 통일교육원 인근에 위치한 덕성여대와 업무협약 체결, 통일·북한 관련 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공유 및 강사 공동 활용 등 협의

□ 추진 계획

- 사회단체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의 교육 참여 확대 및 내실화 도모
- 평화·통일교육 저변 확대 지속 추진
 - 서울시평생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여성, 종교단체 등과 협업 추진
 - 서울시평생교육원과 특별강좌 개설 등 시범사업 실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협력 관계 구축 추진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 핵심 전달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학교,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전문성 강화
- * 법 규정 사항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제9조의2)

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3-1-① 교원 연수(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19년 실적

○ 교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 교원 대상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및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제고에 노력

* △중등 교사반·교장반, 초등 교사반·교장반 등 32회 1,224명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부산대와 경성대 예비교사반 추가) △사이버통일교육 교원 직무 과정 1만 명 이수

○ 교원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

- 통일교육 연구대회 활용 확대, 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원 워크숍 및 우수 사례 발표·전파 등
- 교사연구회 운영(55개), 핵심교원 연수(94명), 한국·독일 교원 교류,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교육 연수, 교사·관리자 연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초등용, 15차시) 등 추진

- 교육청별 현장지원단 체험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연수, 평화·통일교육 초·중등연구회 평화기행 등 추진

* 대표사례 : (경상북도교육청) 교사·교육 전문직 현장체험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통일교육센터 연계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평화 통일교사 도외 체험 연수, 평화 워크숍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연수

□ 추진 계획

○ 교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강화

-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계열 학과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진행 등 2030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교육청·연수원 등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반 편성
- 사이버 교원직무과정 교과목을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콘텐츠 개발시 교원 참여 및 소통 강화로 교육과정 내실화

○ 권역별 평화·통일교육 교사 워크숍 추진

- 4개 권역별*로 전문가 특강, 수업·체험활동·거버넌스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 등 프로그램 운영
- * 1차 : 서울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차 : 중부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3차 : 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4차 :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제주)

○ 시·도 교육청 주요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시·도 연수원, 시·도 교육청, 연구 기관 등 전문가들로 연수 지원단을 구성하여 연수 프로그램 설계, 수도권/충청/호남/영남 권역별로 찾아 가는 연수 운영
- * 충북교육청(단재교육연수원)에서 추진, △평화·통일교육의 이해와 방향 △지역별 평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시·도별 우수 사례 △북한 이해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학생 체험활동,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 운영

○ 시·도 교육청별 맞춤형 교원 연수 추진 지원, 교육청별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 평화·통일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 DMZ 일대 등 교원 현장체험 연수, 평화·통일교육 핵심교원 워크숍, 평화·통일 관리자 연수,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및 수업 연구회 내실화 등
- * 대표사례 : (충청남도교육청) 교사 DMZ·백령도 체험연수, 학교 관리자 평화·통일·인권 체험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DMZ·백령도 체험 연수, 강원도 철원 탐방 워크숍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북·중 접경지역 및 남북접경지역 현장 체험 및 체험 연수 보고회 운영 (대구광역시교육청) 핵심교원 양성,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등 현장지원단 운영

3-1-②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범정부 차원의 통일 전문인력 양성
 - 각 부처 국·과장급 대상 통일미래를 대비한 전문지식·인문소양·정책기획능력 배양을 위한 통일정책지도자과정(60명, 44주) 운영
 - * 정책과제연구, 토론 참여, 모의 남북회담, 현장견학 등
 - 실무급 통일준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통일미래기획과정(연 2회, 회당 6개월) 운영, 참여기관 확대(19개)로 통일 전문인력의 전문성·다양성 확보
- 기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 중앙·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및 교류협력 사례·제도 위주의 신규 과정 개설,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수행 능력 배양
 - 실무/중견, 군인/경찰 등 기능별·직무별 교육 실시
- 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 연계도 추진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 추진 계획

- 통일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 중앙 및 지자체 관계자 이외에 다양한 분야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평화·통일교육 기회 부여
- 연수 대상지역을 다양화하여 연구내용·결과 다변화 도모
 - 연수기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례 조사 및 연수지에 대한 사전 과제를 부여하여 연수의 내실화 유도
- 과정별(기능·직무) 특색에 맞는 △교육기간 △교과목 등 편성 운영

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3-2-① 세대별·분야별 전문가 양성(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차세대 통일전문가반 운영
 - 통일·북한학·사회과학 전공 대학(원)생 등 2030세대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형성 및 통일미래 인적 역량 강화
- DMZ 평화해설사 양성반 운영
 - DMZ 평화의 길 개방을 맞아 현장 해설사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와 평화통일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한 특별반 운영
 - * 각자의 해설 기법 소개 및 시뮬레이션 진행
-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 대상 재교육 실시
 - 전문강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규정* 개정, 최근 정세 반영 및 적시성 있는 강의 지원
 - *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통일부 훈령, 2019.7.22.)

□ 추진 계획

- 2030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일반 대학(원)생 (통일·북한·국제학 전공자 우선) 대상 「청년 통일리더스 아카데미」 신설
 - △주 1회 △8강 △판문점·하나원 등 현장방문 구성, 이론과 현장경험 제공
- 남북교류 행사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광해설사 등으로 신규 교육 대상 확대
 - 문화예술계, 건축사협회, 판문점 관광 안내자 등 교육 대상 다변화
 - DMZ 평화의 길 추가 개설에 대한 평화해설사 양성과정(2회)의 안정적 운영

3-2-②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사회지도층 대상 제9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36명) 운영
 - 의료·방송·언론·법률·회계·문화예술·기업 등 각 분야 인사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각 부처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한반도 정책 △평화와 안보 △남북 과학기술·보건의료협력 △통일외교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강의 진행
 - * 통일외교안보특보,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황석영 작가 등
- 1~9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 수료자 워크숍 개최
 - 최고위과정 수료생 대상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유지 도모
 - * △특강 △문화공연 △만찬 △자치회 활동 등

□ 추진 계획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계 여성 지도층 인사의 참여 확대
 -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
- 교육수요 반영 및 커리큘럼 개선 노력 지속
 - 분야별 정부 정책결정자가 강사로 참여, 정부정책 이해 도모
- 기존 수료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 공감대 확산 전파

4 평화·통일교육 국민인식 제고

◎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의지를 결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 강화 및 통일공감대 확산

* 법 규정 사항 : 통일교육주간(제3조의3)

4-1 통일공감 참여형 문화행사

4-1-① 통일교육주간(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통일부·교육부 공동주최로 제7회 통일교육주간(5.20.~5.26.) 진행
 - 전국 초·중·고 평화·통일교육 수업(5.1.~5.31.) 실시 및 외국인 학생 및 글로벌 인재 대상 수업
 - 제6회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 다문화가족 대상 통일리더가족캠프, 제5회 대학생 통일 모의국무회의,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체험 행사, 「통일청춘 LIVE」 등 미래세대 참여 행사 추진
 - 제4회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특별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행사 지원
 - EBS 특! 특! 보니하니 특별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캠페인 광고 등 홍보

□ 추진 계획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전 국민 대상 평화·통일 메시지 전달
 - 개막식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통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추진
 - 학교·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어린이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공모전 수상자 등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 방안 제고
 - 각 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평화·통일교육이 통일교육 주간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모색

4-1-②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지방자치단체)

□ 2019년 실적

○ 평화통일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개최

- 통일문화행사, 통일캠프,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강연회 및 체험·전시 학습 공간 마련

* 대표사례 : (광주광역시) 2019년 한반도 평화회의, 통일쌀 경작지 사업 (전라남도) 어린이 DMZ 통일캠프 (대구광역시) 2019 대구 통일박람회 (세종특별자치시) '통일바람, 시민의 뜻'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세종 평화통일원탁회의 등 (충청남도) 토크콘서트, 통일공감축제,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 민간 차원의 문화축제, 체육행사, 강연회, 문예제전 등 지원

* 대표사례 : (광주광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평화손잡기, DMZ 평화손잡기 (전라남도) DMZ민+평화손잡기, 8.15 평화통일열차 (경상북도) 포항 통일기원 해변마라톤, 청소년 통일골든벨,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남북 어울림 한마당 등

○ 통일교육주간 계기 지역 공감대 행사 추진

- 통일교육위원, 대학 등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활용, 통일공감대를 집중적으로 확산

* 대표사례 : (강원도) 통일교육주간 계기 접경지역 대학생 토론회

□ 추진 계획

○ 지역사회 중심 '아래에서부터의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공감대 확산 사업 지속 개발, 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은 콘텐츠·형식 등을 발전시켜 지역사회 대표 사업으로 지속 추진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 서울 PEACE 페스티벌 신설 (광주광역시) 제10회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 한반도 평화회의 (충청남도)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 행사 기획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 사업 추진

* 대표사례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통일쌀 경작 사업

○ 통일교육주간, 8.15 광복절 등 특정 계기 적극 활용

* 대표사례 : (강원도) 제8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실시

< 2019년 지방자치단체 통일공감대 행사 >

구분	사업명	일시
강원도	★(통일교육주간 계기) 접경지역 대학생 토론대회	5월
대구광역시	★(통일교육주간 계기) 2019 대구 통일박람회	5월
	'통일바람, 시민의 뜻'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월
	남·북·해외 공동사진전 '평양이 온다'	4월
	세종 평화통일원탁회의	4월
	시민 통일공감 문화토크 콘서트	6월/10월
	민족통일 세종시대회 및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11월
	평화공감 토크콘서트	12월
서울특별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5월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월
	평화·통일 가족캠프(정선)	12월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12월
부산광역시	2019 청소년 통일골든벨 부산지역대회	6월
	평화통일공감 토크 콘서트	7월
	2019 평화공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	11월
	2019 열린 음악회 '다시 부르는 통일의 노래'	12월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DMZ 평화손잡기 행사	4월
	한반도평화를 위한 광주평화손잡기 행사	7월
	관문점 디오라마 전시회	7~9월
	통일쌀 경작지 사업	10월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	10월
	통일기원 대동한마음 축제	10월
	2019년 한반도 평화회의	11월
충청남도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5월
	통일공감축제	6월
	2019년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7월
	한민족통일문화제전	11월
경상북도	포항통일기원 해변마라톤	5월
	청소년 통일골든벨 경북지역 대회	6월
	해외 청소년 나라사랑 국토탐방 및 문화체험	6월
	남북어울림 한마당	10월
전라남도	어린이 DMZ 통일캠프 추진	2~7월
	DMZ민+평화손잡기	4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8·15 평화통일열차	8월
	민족통일전라남도협의회 통일문화제전	10월

4-2 통일공감 온라인 홍보

4-2-① 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소통·참여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사업 착수
 - 미래세대와의 소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3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영상·사진 중심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추진
- 수요자들의 편의성과 선호를 반영, 교육 자료 게시 매체를 다양화
 - 유튜브를 교육채널로 활용 △클립영상 △사이버강좌 영상 △2030세대용 교육 자료 △웹 토크 등 신규 콘텐츠 형식 탑재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이벤트 진행
 - 교육 교재 및 사이버강의 등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 조사,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 * △통일교육주간 인증 이벤트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 이벤트 △사이버강의 학습 완료 이벤트 △내가 만드는 통일교육 콘텐츠 등

□ 추진 계획

-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 핵심 구독자인 203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 활용 평화·통일 교육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사업 추진
 - *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 활용
- 온라인 매체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
 - 웹툰·클립영상·유튜브 콘텐츠 리뷰*·포토에세이 등의 형식에 평화·통일교육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SNS로 배포
 - * 평화·통일 관련 도서·영상자료 등 콘텐츠에 대한 활용 방법, 후기 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

5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조사·연구

- ◎ 출판물, 영상자료,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선 교육 현장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닝(E-Learning)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연구 활동 지원

5-1 콘텐츠 개발

5-1-① 출판물(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기본교재(『2019 통일문제 이해』, 『2019 북한 이해』) 발간
 - △개론서 성격 강화 △남북관계 최근 현황 반영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 구체적 제시 등
- 다양한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의 자료를 개발, 평화·통일교육 도서 대중화 시도
 - * △『보니하니 톡톡 통일 퀴즈북』 △명사특강 『평화의 길, 통일의 꿈』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뮤지컬과 함께하는 통일의 꿈』 △『클립영상 활용 가이드』 △평화교육 참고도서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감성토크 굿 피스』 △평화인문 시리즈 『손 안의 통일(5종)』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의 길』 등
- 유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는 자료 개발
 - * △통일 그림동화 『캠핑 가는 날』 발간 △2018년 발간 동화 『이혜리와 리혜리』의 점자책·오디오북 발간 및 애니메이션 제작

□ 추진 계획

- 기본교재(『2020 통일문제 이해』, 『2020 북한 이해』) 편집·디자인 변화 시도
 - 전문출판사와 협업, 판형·디자인 등 개선 노력
- 역사·문화재·문학 등 다양한 소재의 시리즈 도서 지속 발간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서 등 제작
- 유아·아동 대상 여러 가지 형식의 도서 지속 발간

5-1-② 영상자료(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평화·통일교육 캠페인 광고 「평화와 소통의 두드림」 송출
 - SBS 채널 1,086회, 버스TV 2,028대, 아리랑TV, 정부청사 전광판 등
 - * △SBS 지상파(5~7월)·케이블(5~10월) 송출을 통해 노출 효과 극대화 △SBS의 경우 프라임 시간대인 8시 뉴스 전 방영, 총 2,346만회 시청
- 대상별로 다양한 형식의 영상 자료 제작·방영
 - * △웹기반 예능토크쇼 「감성토크 굿 피스」(4편) △「차이나는 클래스」 통일주제편 △통일교육주간 특집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5편) △특집 프로그램 「만반잘부(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6편) △인기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윙스」 북한편 △학교 교과용 클립영상 재제작(13편) 및 신규 제작(4편) 등



「감성토크 굿 피스」



「차이나는 클래스」



클립영상

- 공공부문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상 자료(3편) 제작·보급

□ 추진 계획

- 청소년, 2030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영상 콘텐츠 개발 지속
 - 평화·통일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문학·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메시지 전달
 - TV 예능 특집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클립영상, 웹 콘텐츠 등 형식 다양화
- 보급 채널을 확대하여 영상 콘텐츠 확산 및 활용도 제고
 - 홈페이지 이외에 TV, 유튜브, 오프라인 채널 등에 영상자료 탑재 및 유관기관,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등에 영상자료 제공
-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상자료 지속 개발 등

5-1-③ 강의안 등 기타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통일교육주간 계기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상, 학습자료 등을 포함한 강의안 개발
 - 초등학교 저학년(4종), 초등학교 고학년(4종), 중학교(4종), 고등학교(3종), 대학생·일반인(1종)
- 학교 평화·통일교육 실시 기반 강화를 위한 자료 제공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교안·교구재 제작 및 보급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학교통일 체험교육 길라잡이』 제작 △클립 영상 활용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등
-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 실시, 우수작을 학교·기관 등에 배포



□ 추진 계획

- 일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강의안 지속 개발
- 신규 제작 클립영상 활용을 위한 수업 지도안·활동지 지속 개발
- 제2회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 개최
 - 당선된 우수작은 △통일교육주간 등 각종 계기시 주요기관에 배포 △홍보물품 도안·통일교육 자료(PPT)로 활용

5-1-④ 교수·학습 콘텐츠(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2019년 실적

○ 교육부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수·학습자료(초등 3종, 중등 2종, 창체 1종), 평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중등 1종), 온라인 콘텐츠(20종)
- 평화·통일교육 누리집 '통통 평화학교'(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개편·운영

○ 교육청별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 * 대표사례 : (전라남도교육청) 초등민주시민교육 중 평화·통일교육 3차시 개발·보급 (강원도교육청) 초등 교재 『같이 가자, 통일강원여행』 개발·보급,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 보급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 3·5학년, 중학생 대상 『한반도의 통일과 오늘』 보급

□ 추진 계획

○ 자료 개발, 우수자료 탑재·보급, 콘텐츠 관리 등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 기반 마련

-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우수자료 공모전 및 참여자 나눔 워크숍, 콘텐츠 관리위원회 운영 등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발굴·보급
- *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 대상) 우수자료 공모전 및 참여자 나눔 워크숍 △(교원 및 예비교원,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콘텐츠 관리위원회(교원, 연구자) 운영

5-2 이러닝 개발

5-2-① 사이버강의(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부)

□ 2019년 실적

○ 사이버교육 과정용 콘텐츠 10과목 52차시 개발

- * △(평화·통일문제) ‘평화가 경제다’ 등 5과목 △(북한이해) ‘숫자로 보는 북한 주민생활’ 등 2과목 △(국제·기타)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보는 2019년 국제 정세와 한반도’ 등 2과목 △(교원) ‘초등 통일교육’ 1과목
- * (교육부) 초등 교원 대상 원격연수 콘텐츠 15차시 개발

○ 공공·교원·방북·경상남도교육청 등 4대 과정 운영 및 2030·시민과정 신규 과정 개설

- 과정별로 사용자 편의에 맞춰 사이버강의 서비스 제공, 35만 명 이수
- * 통일교육 사이버강의 수강 인원 : △통일교육원 22만 명 △기획재정부 등 타 기관 제공 13만 명

○ K-mooc*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통일 콘텐츠 접근성 제고

- 2개 과목(△숫자로 보는 북한주민생활 II △세 개의 한반도, 그리고 나와 우리의 꿈)을 교육부 주관 K-mooc 시스템에 탑재·운영
- *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 : 대학 등의 우수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체능, 인문사회, 공학 등 다양한 강좌 제공

□ 추진 계획

○ 사이버교육 과정용 콘텐츠 개발 확대

- 사전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과정별(공공/교원/2030/시민/경남교육청/방북) 최적화 콘텐츠 제공

- * △공공과정 : 공공기관별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콘텐츠 △교원과정 : 교사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2030과정 : 모바일 적합형 마이크로 콘텐츠 등
- * (교육부) 중등 교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15차시(△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목표, 방법 △주제연계형 평화통일 수업 △해외 평화교육 사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개발

○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도서 및 영상 개발과 협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

- △호응이 좋은 영상·도서는 사이버강의로 개발 △인기 사이버강의는 책자로 발간 △사이버강의 교과목을 다양한 교육과정(공공, 2030, 시민과정 등)으로 변용

○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업데이트 등 콘텐츠 최신성·정확성 유지
- △교원과정 운영 개선* △현장체험 확대 △우수 교육생에게 다양한 상품 제공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 * 한국교원학술정보원(KERIS) 운영 평가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 교육생(교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

5-3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사·연구

5-3-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초·중·고등학교 598개교 대상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 ('19.10~11월)
 - △초·중·고등학생 66,042명 △사회·도덕·역사 등 통일교육 관련 교사 등 3,817명 대상 통일인식·대북인식·통일교육 관련 설문

< 2019년 학교통일교육 학생·교사 실태조사 >

○ 초·중·고 학생

- 북한(정권)에 대한 생각 : 협력 43.8%(7.1%p ↓) > 경계 35.8%(7.6%p ↑) > 지원 8.2%(3.9%p ↓) > 적대 8.1%(2.9%p ↓)
- 북한 이미지 : 전쟁·군사 31.8%(2.1%p ↑) > 독재·인물 27.0%(0.3%p ↑) > 한민족·통일 21.8%(3.1%p ↓)
- '통일 필요성' 55.5%(7.5%p ↓), '통일 불필요' 19.4%(5.7%p ↑)

○ 교사

- 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1.9%(8.9%p ↑), '원활하지 않다' 8.4%(3.0%p ↓)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다양한 체험활동(50.4%) △통일교육 자료 보급(48.4%) △교사의 전문성 향상(28.0%) △학생·학부모 의식개선(21.8%) △통일교육 시간 확보(21.4%) 등(복수응답)

□ 추진 계획

-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평가
 -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개선점 평가
- 설문 문항 및 대상 등 재설계
 - '20년 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조사문항 관련 재설계 등

5-3-②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19년 실적

- 제7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개최
 - 전문가,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쟁점, 구체적 교육 방법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 진행
- 평화·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추진
 - 『통일교육 선도대학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평화·통일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재구조 방향 탐색』,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개최
 - 국제정세 및 한반도 번영과 평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 발굴 등 논의
 - * 대표사례 : (강원도) 2019년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아태 차관보, 진징이 중국 북경대 교수 등 참석) (경상북도) 도민 대상 경북평화통일 포럼, 경북 통일리더스 포럼
- 주요 학술 행사 계기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추진 방안에 대한 메시지 전달
 - * 대표사례 : 한반도통일문화관광복지포럼 창립식,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 연구원 학술회의, 경기연구원 평화교육포럼 등

□ 추진 계획

- 교육 현장에 반영되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기획
 - △문제의식 공유 및 사안별 해결방안 논의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현장·체험·참여 프로그램 전시도 병행
- 지방자치단체별 평화·통일교육 정책 도출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저명인사 초청 학술회의 개최
 - 전문가 강의 및 토론, 각 분야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네트워크 형성

6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 ◎ 통일·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 미래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을 운영하여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법 규정 사항 : 통일관(제6조의4~제6조의6)

6-1 통일 문화공간

6-1-① 통일관(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12개 지역 통일관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18년 대비 35% 증가한 200여만 명 관람
- 오두산통일전망대 기획전시 등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 △남북한 특별전, '평화, 하나 되다' △'통일기원' 현대조각전 △ 4.27 판문점 디오라마 특별전시전 등
- 9개 통일관, 통일교육주간 계기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남북 전래놀이 체험, VR(가상현실) 통일체험, 북한 영화보기 등
- 체계적이고 안전한 통일관 운영을 위한 지원
 - △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마련 △상·하반기 전국 통일관장 회의 개최 △시설물 보수 보강 및 환경 개선

□ 추진 계획

- 오두산통일전망대를 대표적 통일체험 교육장으로 육성
- 지역 통일관을 통일체험 및 북한 관련 정보 습득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 추진
 - 지역 통일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운영
 - 통일관이 없는 지자체에 통일관 지정·설립 추진

6-2-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2019년 실적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 대상 통일체험연수 운영(92개 학교·단체 연인원 23,289명)
 - △초·중·고등학교 대상 일반 통일체험연수 운영(25개 학교 연인원 6,646명) △대학생·가족·탈북 청소년·이산가족·재외동포 등 초청 특화 통일체험연수 기획·운영(67개 단체 연인원 16,643명)
- 고객 수요 및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선
 - △기본 단위프로그램 개편(20개→16개) △기존 2박 3일에 당일·1박 2일 일정 추가 △심화·특화 단위프로그램 신규 개발(17개) 등
- 최신 기법을 적용하여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
 - 문화영역 콘텐츠 교체 및 프로그램 안내 영상 부스 설치 등

□ 추진 계획

- 안정적 통일체험연수 운영
 - 50여 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일반 통일체험연수, 탈북 청소년·이산가족·재외동포·외국인 등 대상 특화사업 추진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선 및 보급 확대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선 △외부 수련기관에 프로그램 보급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배포 등
- 안정적 통일체험연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환경 개선
 -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보완 △안전·편의시설 개선 등

7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해외 신진학자,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 실시, 해외 전문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7-1 평화·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7-1-① 해외 전문가 초청(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전문가 초청, 기관별 맞춤형 특강 실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
 - △버트 켄킨스(호주) △니시노 준야(일본) △김강일(중국) △카타리나 켈위거(스위스) 초청
 - 평화교육 및 상생·협력의 생태학, 한반도 평화와 한일관계, 북한 사회 변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장애인 인권 실태 등 주제로 강의
 - * △연구기관 △정부부처 △대학 △시민단체 대상 강의(총 33회 1,250명)
- 국내·외 전문가 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
 - 해외 전문가 초청시 DMZ 등 현장견학 실시 및 국내 전문가와의 학문적 교류 추진

□ 추진 계획

- 평화전문가 초빙 및 초빙교수 일부는 중견·유망학자로 선정
 - UN대학교 및 UN평화대학교 교수진 등 평화교육 전문가 물색, 수강생 대부분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 중진급·새로운 분야의 전문가 초빙 추진
-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 검토
 -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전문가 강의를 녹화, 사이버 교육에 활용

7-1-② 평화·통일 글로벌 교류(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19년 실적

- 평화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북유럽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 구축
 - 평화문제 연구기관*과 업무 협력 방안 모색, 노르웨이·스웨덴 지역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및 평화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성
 - *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ISDP)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 청소년 평화교육 전문가* 방문, 노르웨이 - 스웨덴 체험 학습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체험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가능성 모색
 - * 국제청소년여름캠프(Children's International Summer Village, CISV) 스웨덴 지부
- 지역 교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
 - 민주평통위원* 및 한인입양인협회 간부 등 현지 교민사회 여론 주도층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일정책 설명 및 지지 확보
 - * 스웨덴 지역 민주평통 19기 출범식 참석 및 위원들 격려
- 교원 해외 교류 및 해외 사례 연구 및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제고
 - * 대표사례 : (강원도교육청) 독일 청소년 통일 캠프 참가, 학생 동북아 평화·통일 체험 학습 참가

□ 추진 계획

- 호주, 북유럽 등 지역의 평화문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발전 방안 모색
- 해외 평화·통일교육 확대 방안 검토 및 교재 개발
 - 제22기 통일교육위원 선발시 유럽 지역 안배 문제 검토, 해당 지역 재외동포·연구기관 등의 수요 파악 후 교육 자료 개발시 반영

7-2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추진

7-2-① 해외 신진학자 대상 평화·통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2019년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운영, 해외 신진세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전 세계 21개국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신진학자·공무원·언론인 등 총 24명이 참여
- 교육생들의 만족도 제고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개선 시도
 - △사전 교육 실시 및 교육 수요 조사 △한국 역사·문화 체험 신설 △참여 인원 확대, 국적* 및 직종의 다양화 등
 - * 동티모르·미얀마·바레인·스리랑카·아르헨티나·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이집트·카자흐스탄 등 21개국 중 10개국 최초 참가
- 기존 통일아카데미 참가자들과의 소통 지속, 친한 성향 인사로 유도
 - 참가자 대상 통일 관련 동향 제공, 해외 기관 협업 등

□ 추진 계획

-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사업 해외·국내 과정으로 확대 운영
 - (국내) 외국인 석·박사생 대상 신규 교육과정(3~5일) 신규 개설
 - (초청) 참가자 국적 다양화 지속, 평화교육 관련자 참석 추진
- SNS를 활용, 역대 참가자(141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현재 운영 중인 페이스북 외에 위챗, 인스타그램 등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참가자 방한 등 계기 신진학자 네트워크 활용

7-2-②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평화·통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9년 실적

- 다양한 학교·기관과 협력하여 주한 유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국내 한국인 학교에 국한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각지대 해소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학 중앙연구원 협력 사업으로 진행, 통일교육주간 계기 국내 외국인 고등학교* 대상 특강 최초 실시
 - * 부산국제외고, 서울독일학교, 서울국제학교
- 외국 대학생* 대상 한반도 평화 및 한국 문화 체험 교육 및 한국 대학생과의 교류 주선
 - * 이화여자대학교 - 하버드대학교, 듀크대학교, 썬타주크대학교
- 인재 양성 차원에서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영역 확대
 - 해외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해외에서 한반도 통일 메시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국내 석·박사 과정* 대상 특강 실시
 -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글로벌 다큐 「임브레이싱 피스」 2부작 방영
 - * 아리랑 TV, 회차별 총 6회씩, 전 세계 103개국 방영

□ 추진 계획

- 국내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대상 평화·통일교육 특강 정례화
 - 대상 학교 협력 및 외국어 가능 학교통일 전문강사 활용
- 해외 진출 예정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확대 모색
 - 해외 인턴십 예정자, 국비 장학생 등 해외 연수·유학 준비자 대상 교육 실시
-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평화·통일교육 교재 발간·배포(영문판)
 - * 『통일문제 이해』,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등



협조·요청사항

V. 협조·요청사항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① 대상 기관

- 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법 제6조의7)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통일교육 의무 대상 기관 >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 : 18부 5처 17청 * 재외공관 제외
 -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 2원 4실 6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 * 각급 학교(교사) 제외(단, 아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학교는 포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비대상

② 교육 방법

- 통일교육 계획 및 수강 방법
 - 의무 이수시간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이며, 교육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강의 △기타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 중 선택하여 수강
 - 본부·본청 등 최상위기관은 대면 강의 1회 이상 포함 권장

< 통일교육 계획 및 수강 방법>

- 집합 교육 : 추천 강사, 외부 초청강사, 소속 직원 등 대상 기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실시
- 시청각교육 : 교육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교육 관련 영상자료 시청
- 사이버강의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교육센터' 또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www.uniedu.go.kr/unipudu/) '공공과정 사이버교육 신청'을 통해 강의 수강 △나라배움터 등을 통한 통일교육 주제에 맞는 강의 수강
- 기타 : △세미나 △학술회의 △워크숍 △독서 토론 △학습동아리 △현장견학(DMZ, 통일전망대, 지역통일관 등 통일·북한 관련 장소·시설물 등)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 참여 △지역통일교육기관(지역통일교육센터 등) 활용 등 가능

* 교육자료 등의 단순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은 불인정

< (예시) 통일교육의 내용 >

과목	내용 요소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남북관계의 전개 ·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 통일의 비전과 과제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통일 미래상 · 분단과 평화 · 평화경제 · 분야별 남북교류 및 인도적 협력 · 통일인문학 등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변화 전망 등 ·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외교·군사·경제·교육·문화·예술, 주민생활 등)

*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참고, 동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에서 내려받기 가능

- 통일부(통일교육원)는 통일교육 강사 정보 및 콘텐츠 지원
 - △추천 강사 리스트 △표준 강의안 △사이버교육과정(콘텐츠 포함) △영상자료 △도서자료 등
 - 실적 집계 편의를 위해 매월 사이버강의 수강결과를 수강자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대상 기관(소속 직원)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준수 및 유의사항 숙지
 -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개인적·당파적 이용 금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법 제3조)
 - 교육 내용이 평화통일과 무관하거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적 불인정 가능

3] 교육 실적 제출

- 대상 기관들은 매년 2.28까지 전년도 통일교육 실적 제출
 - 교육 대상 직원의 60% 이상 참여를 권장하며, 제출된 실적을 집계하여 국무회의 보고 예정
 - * 제출된 실적에 대한 점검·보완 요구·현장점검(필요시) 실시 가능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통일안보교육'과는 별개로, '20년도부터 '통일안보교육' 명칭으로 실적 제출시 불인정
 - 단, 통일교육 명칭의 통일안보 주제 교육은 허용

2 통일교육주간 참여

1 통일교육주간 개요

- 국민의 통일외지 결집을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규정(법 제3조의3)
 - △기념행사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국민들의 통일외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 '20년 제8회 통일교육주간은 5.18. ~ 5.24.로 동 법정 주간에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 행사 개최 필요

2 통일교육주간 참여 요청

- (교육청)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수업 진행 △교육감 일일 통일교사 참여
 - 지원 사항 : 학년별 강의안, 학급 단위 참여 온라인 이벤트 등
 - * 통일교육주간 관련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 △실시(80.9%), 미실시(17.6%) △수업 중 교과 관련 단원 지도(46.1%), 교내 행사, 동아리, 진로 등 창체 시간 활용(39.3%), 통일 관련 외부 기관 및 전문강사 활용 지도(3.3%), 현장체험 학습(0.4%)
- (지자체) 자체 평화·통일교육·문화 프로그램 추진 및 통일관, 지역 통일교육센터, 시민단체 등의 통일교육주간 행사 지원
- (부문별 기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추진
 - 학술세미나,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홍보 부스 운영, 공모전,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3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시책 수립·시행(법 4조)
 - 지역사회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지역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 △지역통일교육계획 수립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통일교육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 * 조례 제정 지자체(12)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 조례 제정 교육청(15) :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② 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과정에 평화·통일교육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교원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등(법 7조·시행령 6조)

< 평화·통일교육 권장 시수 >

- 2주 이상 3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4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교육훈련과정 : 8시간 이상

- 교육훈련기관이 강사를 섭외하여 자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통일교육원 사이버강의 이수를 각 기관 교육 실적으로 집계 가능
- 통일교육원과 교육훈련기관 연계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학습 등을 포함한 별도 과정 진행도 협의 가능



부 부

VI. 부록

1 2019년 통일교육 통계

① 통일교육원 교육과정별 통계(원내 교육 + 원외 교육)

(단위 : 회/명)

교육과정		횟수	인원	교육과정		횟수	인원
전문과정	통일정책최고위과정	1	36	글로벌 통일 교육 과정	해외신진학자반	1	24
	통일정책지도자과정	1	60		외국대학생반	2	41
	통일미래기획과정	2	29		주한유학생반	4	133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1	32		일본대학생반	1	21
소 계		5	157	소 계		8	195
공직자 통일 교육 과정	통일부공무원반	3	130	특별 교육 과정 (기타 포함)	차세대 통일전문가반	2	37
	중견간부공무원반	2	67		특별반	5	214
	중견실무공무원반	2	67		평화해설사반	2	47
	비상대비 업무담당반	1	33		(기타과정)연찬반 등	5	263
	남북교류협력담당반	1	27	소 계		14	561
	지자체공무원반	10	354	사이버 통일 교육 과정	공공과정	11	200,095
	경찰공무원반	3	121		교원과정	11	10,629
	군인공무원반	4	139		경남교육청과정	상시	638
	공직자평화통일역량강화반	3	59		2030 과정	상시	3,782
	공무원 교육기관 연계과정	10	1,074		시민과정	상시	2,701
	공공기관반	2	46		방북교육과정	상시	1,739
소 계		41	2,117	소 계		22	219,584
학교 통일 교육 과정 (교원)	중등교장(감)	7	221	원내교육 총계		152	225,310
	중등교사(기본)	3	152	원외 교육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1,124	82,677
	중등교사(심화)	2	89		일일통일교사	27	2,589
	초등교장(감)	7	337		옴니버스 특강	118	3,902
	초등교사(기본)	2	111		통일·북한 강좌	487	5,858
	초등교사(심화)	2	50		캠프 등 체험교육	109	11,474
	초등(유치원교사)	1	28		해외전문가 초빙교수	33	1,250
	예비교사반	7	212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15	67,400
	강원양구교육지원청 학교장반	1	24		지역통일교육센터	1,883	257,254
소 계		32	1,224		통일교육협의회	319	38,638
사회 통일 교육 과정	통일교육위원반	4	152	사회단체	32	3,235	
	통일단체반	21	1,124	원내교수출강	238	18,646	
	종교단체반	2	72	원외교육 총계		4,385	492,923
	하나센터반	3	100	총 계		4,537	718,233
	소 계		30	1,448			

② 교육훈련기관별 통일교육* 통계

(단위 : 시간/명)

구분	소속	교육훈련기관	현장학습		원내 강의	
			시간	인원	시간	인원
국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24	42	52	8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	3	63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2	490	27	376
	법무부	법무연수원	51	1,125	30	1,223
	통계청	통계교육원	-	-	21	88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	2	22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울시인재개발원	14	138	35	53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	-	57	75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32	101	73	1,96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	-	20	49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119	3,123	106	361
	강원도	강원도인재개발원	105	776	53	1,717
	충청남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	-	4	245
	전라남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	-	5	1,850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37	125	20	1,454
	경상남도	경남인재개발원	7	13	31	160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10	143	47	797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70	268	22	389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10	77	66	55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수원	28	309	62.5	1,927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41	63	10.5	279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연수원	13	52	15	455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11	95	21	95

* 사이버강의 및 원외 교육 제외

2 2020년 통일교육 예산

□ 통일교육원 주요사업비 예산

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91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통일정책지도자, 통일미래기획)	794
	통일미래 맞춤형 교육 운영(최고위, 전문강사)	197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추진	168
	평화해설사 양성(신규)	15
	통일교육자료 개발 보급	2,180
	통일교육자료센터 운영	69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프로그램	74
	계	3,888
학교통일교육 강화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지원	1,478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786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999
	계	6,263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구축	2,313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2,403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200
	계	4,91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475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청사 관리 운영	1,277
	시설 개보수(시설비 등)	779
	계	2,056
총계		17,598

* 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3

통일교육 법령

1 법

통일교육 지원법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 통일교육위원회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2018.9.11. 일부개정, 2018.9.14.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 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장비를 보유할 것
 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장비 개요서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 ③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 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3 조례

구분	기관명	조례명	제개정일
지자체 (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7. 1.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2015.12.18.
	경기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11.12.
	강원도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2016.12.30.
	충청남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2.31.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30.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1. 2.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3.
교육청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5.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9.30.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 4.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23.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2.29.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12.2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4.29.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3. 8.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2018.11. 9.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 6. 8.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3. 1.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 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2. 8.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6.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